

공사입찰 재 공고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-196호 「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단지개요

- 가. 단 지 명 : 파주호성해링턴플레이스
- 나. 소 재 지 :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소곡로30
- 다. 단지규모 : 490세대, 8개동, 연면적 58,970.5525㎡
- 라. 사용 검사일 : 2018년 2월 21일

2.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

- 가. 입찰 방식 : 제한경쟁입찰, 전자입찰(www.k-apt.go.kr)
- 나. 낙찰자 선정방식 : 최저가 낙찰제

3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- 가. 열화상 CCTV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(국산 열화상 카메라 3면용 4대, 모니터 1대, NVR 1대, ARS+문자+톡 알림프로그램, 통신라인 구축 등 일체)
- 나. 카메라 설치 위치 : 지하 2층 전기차 충전소
- 다.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치 위치 : 방재실

4. 입찰참가 자격

- 가.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-196호 제26조(참가자격 제한)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
- 나. 정보통신 고급기술자 1인 포함 기술자 3인 이상 보유업체
- 다.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 이상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
- 라.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열화상 CCTV 모니터링 공사 실적이 5건 이상인 업체

5. 현장 설명회

- 가. 현장 설명회 일시 : 없음

6. 입찰 서류

- 가. 입찰서 및 산출 내역서(견적금액은 VAT 별도), 입찰보증증권(또는 영수증) 각 1부
- 나.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
- 다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라. 법인등기부 등본 1부,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(개인 정보는 제외함)
- 마.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(공고일 이후 발행 분)
- 바. 관련 면허 및 등록 업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
- 사. 관련 공사 실적 증명 자료 1부
- 아. 행정처분확인서 1부
- 자.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사실유무 확인서 1부
- 차. 시방서 1부

7. 서류 제출 및 선정 방법

- 가. 제출기한, 장소, 제출방법 : 2026년 9월 21일(화요일) 17:00 ,
제출서류 일체 www.k-apt.go.kr에 등록 제출
- 나. 개찰일시 : 2026년 9월 22일 10시/ 전자입찰 시 관리사무소 PC (단, 단지 사정에 따라
개찰 일시는 변동될 수 있음.
- 다.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-196호에 의거 최저가 업체 선정 함.

8. 입찰의 무효

- 가. 국토교통부 고시 2024-196호(별표3)에 해당시 무효로 함
- 나. 선정된 업체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체결 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단지로 귀속됨.
- 다. 제출서류에 하자 또는 허위사실이 있거나, 담합 및 기타 부정행위 발견 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함.
- 라. 무효인 입찰이 있는 경우 전화, 팩스, 문자, 이메일 등으로 통보 함.

9. 기타 사항

- 가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.
- 나. 입찰 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미리 숙지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,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.
- 다. 선정된 업체는 계약금액의 10%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함.
- 라.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름.
- 마. 문의 : 파주호성해링턴플레이스 관리사무소 (☎ : 031-945-1183)

2026 년 09월 10일

파주호성해링턴플레이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(직인생략)

입찰서			
*참가번호		입찰명칭	열화상 CCTV 시스템 구축 및 ARS 설치 사업자 선정
입찰가액	₩		
입찰보증금	₩		
위와 같이 입찰보증금(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)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. 년 월 일			
입찰자			
상호(성명)			
* 대표자			
법인등록번호 (개인은 생년월일)			
사업자등록번호			
주소(전화번호)			
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			
기재방법	*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.		

공 사 시 방 서

1. 공 사 명 : 열화상 CCTV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및 ARS 알람서비스 설치

2. 공사기간 : 착공일로부터 1 개월

3. 공사범위 : 전기차 충전시설에 열화상카메라 4 대 및 NVR/PC, 긴급알람 시스템 설치

4. 일반사항

가. 열화상감지장치는 보안상의 이유로 국내산 제품을 구매한다.

나. 열화상감지장치는 전기차량의 단계별 온도감지를 위한 3 상(3 개 온도) 감시가 가능한 제품으로 구매한다.

다. 열화상감지장치는 정확한 온도측정을 위해 온도 정확도가 $\pm 2.0^{\circ}\text{C}$ 이내인 제품으로 구매한다.

라. 열화상감지장치는 일반차량 온도 및 오작동 방지기능이 장착된 제품으로 구매한다.

마. 설정온도 이상 징후 발생 시 관리자·방재실 담당자에게 ARS 전화·문자·특으로 긴급알람이 동시에 실시간 자동 발송되어야 한다.

바. 관리자는 휴대전화 등 이동 단말을 이용하여 위치 이동 중에도 시간·공간의 제약 없이 이상 징후, 경보 위치 및 온도정보를 ARS 전화·문자·특으로 수신·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.

사. 긴급알람서비스는 수신 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미수신자에게 재알람이 가능하여야 한다.

아. 열화상감지장치에서 제공되는 열화상 화면을 저장장치(NVR/PC)를 통해 제공·저장하여야 한다.

자. 긴급알람 시 화재지점 위치정보, 차량순서정보 또는 감시위치, 경보단계·온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차. 화재·재난·대피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관리자가 관리사무소 내부·외부 여부와 관계없이 시간·장소에 제약 없이 입주민 전체에게 대피 및 재난알림을 ARS 전화·문자·특으로 즉시 발송할 수 있어야 한다.

카. 관리자 대상 자동알림과 입주민 전체 대피알림은 권한을 구분하여 오발송을 방지하고 발송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.

타. 입주민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 및 관리주체의 개인정보 처리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
5. 특별사항

가. 열화상감지장치의 국내산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.

나. 3 개 온도감지 시 자동으로 ARS 전화·문자·특 알람이 발송되는 시연 영상을 제출해야 한다.

6. 열화상감지장치 사양

가. 명칭 : 고정형 열화상 감지장치

나. IR 센서 : Uncooled IRFPA Microbolometer

다. IR 픽셀간격 : $25\ \mu\text{m}$

라. IR 해상도 : $160(\text{H}) \times 120(\text{V})$ 이상

마. 프레임 속도 : $15\text{Hz}(\text{FPS})$ 이상

바. 감지 타입 : 온도 감지

사. 화각(FOV) : 약 $91.7(\text{H}) \times 68.8(\text{V})$ 또는 동등 이상

아. 정확도 : $\pm 2.0^{\circ}\text{C}$ 이내

자. 온도 측정 범위 : $0^{\circ}\text{C} \sim 250^{\circ}\text{C}$ 이상

차. 렌즈구성 : 열화상

카. R.O.I/타입 : 29 개 영역 지정/점, 선, 사각형, 다각형 또는 동등 이상

타. 온도 감시 알람 : 3 상 감시, 최고 온도 이상

7. NVR/PC 사양

- 가. 동시 접속 감지장치 수 : 4 대 이상(확장 가능한 구성 권장)
- 나. 사용 프로토콜 : 카메라 전용 프로토콜 또는 동등 연동 프로토콜
- 다. 소프트웨어 ROI : 32 개 이상
- 라. ROI 타입 : 선, 점, 사각형 등
- 마. 온도 연산 : 최고 온도 이상 감지, 최저 온도 이하 감지, 화재 감지
- 바. 기능 : 온도감지 카메라 연동 / 라이브·녹화 트렌드 / 저장장치 지원 / 이상온도 3 개 감지 시 자동 ARS·문자·톡 알림 / 일반 이동차량 온도감지 제외 알고리즘
- 사. PC/NVR : 열화상카메라 4 대의 실시간 관제와 영상저장이 원활한 동등 이상 사양으로 구성하고 세부규격을 산출내역서에 명시

8. ARS·문자·톡 긴급알림서비스

- 가. 열화상감지장치의 3 개 온도감지 이상 징후 발생 시 관리자·방재실 담당자 등 지정 휴대전화로 ARS 전화·문자·톡 긴급알림을 자동·실시간 발송한다.
- 나. 관리자는 휴대전화 등 이동 단말을 통해 위치 이동 중에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이상 징후 및 경보정보를 수신·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.
- 다. 수신 여부 확인 및 미수신자 재알림 기능을 제공한다.
- 라. 발송메시지는 설치위치정보, 차량순서 또는 감시위치, 경보단계·온도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.
- 마. 화재·재난·대피가 필요한 긴급상황에서는 관리자가 현장, 관리사무소, 외부 이동 중 등 현재 위치와 관계없이 입주민 전체에게 ARS 전화·문자·톡으로 대피 및 재난알림을 즉시 발송할 수 있어야 한다.
- 바. 입주민 전체 긴급알림은 관리자가 승인·발령하는 구조로 운영하며, 권한관리와 발송이력 확인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.
- 사. 입주민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관리주체의 개인정보 처리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
9. 수량(산출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)

- 1-1. 열화상감지장치 ----- 4 EA
- 2. NVR/PC(모니터 포함) ----- 1 EA
- 3. 긴급알림서비스 API ----- 1 식
- 4. 설치공사 및 네트워크·배관·배선 --- 1 식